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17일 백 중 훈 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21.) 상정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21.)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백 중 훈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인터넷방송”과 “웹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부천의 도시브랜드인 “판타지아”를 이용하여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판타지아방송국”으로 “웹진”을 “판타지아웹진”으로 새롭게 명칭을 정함.(안 제 3조)
- 방송주기는 주 1회 이상, 발행주기는 수시게재로 명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민기자,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 모니터 요원 등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안 제정 사유는?	○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의 충족과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홍보매체를 말하며 "웹진"이라 함은 인터넷상에 웹을 기반으로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부천시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명칭은 "판타지아방송국"으로 하고, 부천시 웹진(이하 "웹진"이라 한다)의 명칭은 "판타지아웹진"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등) 방송 제작인 및 웹진의 발행인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방송주기)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주1회 이상 제작하여 방송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발행주기) 웹진의 기사는 수시로 제작하여 게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내용)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시정·구정·동정·의회소식
2. 생활·교양·문화·건강·취업 정보
3. 시민 생활편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8조(게재사항) 웹진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구정·동정·의회소식
2. 문화·예술·산업·경제·교육·청소년·여성·복지·환경·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및 기고
4. 만화, 칼럼 등 연재물

제9조(시민기자 등) ① 시장은 방송국과 웹진 운영을 위하여 시민 기자와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 모니터 요원(이하 "시민기자 등" 이라 한다)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기자 등에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한다.

④ 시민기자 등은 방송과 웹진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10조 (수당) 시장은 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발의년월일 : 2008. 10. 17.

발의자 : 백종훈 의원
등 25인

1.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방송”과 “웹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부천의 도시브랜드인 “판타지아”를 이용하여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판타지아방송국”으로 “웹진”을 “판타지아 웹진”으로 새롭게 명칭을 정함.
(안 제 3조)
- 방송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수시계재로 명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민기자,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 모니터 요원 등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홍보매체를 말하며 "웹진"이라 함은 인터넷상에 웹을 기반으로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부천시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명칭은 "판타지아방송국"으로 하고, 부천시 웹진(이하 "웹진"이라 한다)의 명칭은 "판타지아웹진"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등) 방송 제작인 및 웹진의 발행인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방송주기)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주1회 이상 제작하여 방송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발행주기) 웹진의 기사는 수시로 제작하여 게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내용)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시정·구정·동정·의회소식
2. 생활·교양·문화·건강·취업 정보
3. 시민 생활편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8조(게재사항) 웹진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구정·동정·의회소식
2. 문화·예술·산업·경제·교육·청소년·여성·복지·환경·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및 기고
4. 만화, 칼럼 등 연재물

제9조(시민기자 등) ① 시장은 방송국과 웹진 운영을 위하여 시민 기자와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 모니터 요원(이하 "시민기자 등" 이라 한다)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기자 등에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한다.

④ 시민기자 등은 방송과 웹진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10조 (수당) 시장은 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